

전자책 시장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디지털자료 납본에 따른 진통 예상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디지털자료납본및이용에 관한법률안이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에 빨리 묶여있다. 전자출판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설명회’ 이후 “관련업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전자책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판업계는 이 법안이 출판 산업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 자료 납본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관련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자료 제출이 결정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디지털 도서관이 해킹을 당해 판매 목적의 전자출판물들이 외부에 마구잡이 유출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디지털 출판물의 대부분을 구매하는 대학도서관들이 국가디지털도서관과 납본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 주요 소

비시장이 사라지게 될 게 뻔해 전자출판 업계의 존립까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도서관협회의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이 법안이 판매목적이 아닌 대학의 논문이나 저널 등을 해당기관 허락 없이 ‘자동수집’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화 된 논문이나 저널은 대학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적 재산이고 각종 수익사업에 활용할 귀중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무조건 가져가겠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한다.

(표1) 연도별 도서자료 납본 수집 현황

(단위 : 책, 부, 점)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합 계
	일반	학위논문	소계	잡지	신문	소계		
2004년	139,906	132,408	272,314	98,703	130,145	228,848	35,687	536,849
2005년	137,676	125,252	262,928	95,216	132,139	227,355	47,856	538,139
2006년	144,238	133,464	277,702	96,055	135,081	231,136	44,000	552,838

(표2) 연도별 도서자료 납본보상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합 계
	보상금액	평균	보상금액	평균	보상금액	평균	
2004	676,131	2,483원	204,379	893원	250,956	7,032원	1,131,466
2005	781,764	2,973원	224,198	986원	529,994	11,075원	1,535,956
2006	891,339	3,210원	224,492	971원	660,168	15,004원	1,775,999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자료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그 가치를 판단할 여유도 없이 짧은 기간에 소멸되고 있어 가치 있는 디지털자료의 보존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래 인터넷 디지털자료의 수집, 보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위한 입법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자료는 단순히 공공기관, 개인, 법인, 단체가 생산한 개개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인프라로서 공공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도서관법상의 납본제도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디지털자료납본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으로 활용 및 보존가치가 있는 디지털자료를 납본 받아 보존함과 동시에 디지털도서관을 통하여 국민들이 공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료 납본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등 귀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국민들의 정보 활용능력을 신장시키려는 것이다.

도서자료 납본 현황 및 납본보상금 지급실태

「도서관법」제20조에 의한 의무적 납본대상 자료는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등의 유형물이며 각 2부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납본보상금은 판매정가의 50%를 출판사 등 납본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비매품 또는 무가(無價)자료는 '정당한 가격' 이 없으므로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04년에는 53만6849건을 납본 받고 11억3100만원을 납본보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53만8139건에 15억3500만원을, 2006년에는 55만2838건에 17억7600만원을 집행하는 등 해마다 납본건수와 납본보상금이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평균 납본보상금액은 2006년의 경우 도서 3210원, 연속간행물 971원, 비도서자료 1만5004원이다.

한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관련 법안은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 처리된 일정 유형의 디지털 자료가 만들어질 경우 현재 건립중인 국립디지털도서관에 제출, 보관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출대상 디지털 자료는 전자도서, 전자잡지, MP3 등 음악 파일, 동영상자료, 각종 전자문서 등이다. 디지털 자료를 납본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디지털자료납본및이용에관한법률 주요내용

- 가. 사회적으로 활용 및 보존가치가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국가적으로 수집하여 영구 보존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디지털자료의 수집, 이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디지털자료 관리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디지털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을 둠(안 제7조).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디지털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지역 디지털도서관 설치를 우선하여야 하며, 정보소외계층 이용시 부과되는 디지털자료 이용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0조).
- 마.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외국 도서관 등에 보관된 대한민국 관련 자료 중 학술적·예술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수집, 구축,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